

#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박병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0946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2. 21.

발의자 : 박병석 · 유동수 · 손혜원

오제세 · 윤관석 · 신창현

박정 · 추미애 · 손금주

조승래 · 정성호 · 박찬대

김정우 · 민홍철 의원

(14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재외공무원 복무규정」 제13조는 재외공무원이 국위손상, 국가이익 위반, 업무태만, 복무상 의무 위반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이 소환 및 징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러한 소환 · 징계 및 그 밖의 인사 관련 조치는 재외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로서 헌법 제75조에 따라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함.

하지만 「재외공무원 복무규정」의 상위법인 「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」은 소환 · 징계 및 그 밖의 인사 관련 조치에 대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하위법령인 「재외공무원 복무규정」에서 정하고 있는 재외공무원의 소환 · 징계 및 그 밖의 인사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

서 규정하여 하위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목적  
임(안 제6조).

법률 제 호

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중 “보수와 직무”를 “보수와 직무·소환·징계 및 그 밖의 인사 관련 조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직제 등) 공관의 직제, 소속 공무원의 종류 · 정원 · <u>보수</u> 와 <u>직무</u>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	제6조(직제 등) ----- ----- <u>보수</u> <u>와 직무 · 소환 · 징계 및 그 밖의 인사 관련 조치</u> ----- -----.